

	원격수업관리위원회 규정	문서번호	5-1-39		
		제정일	2017. 06. 20.		
		개정일	2022. 02. 25.		
		페이지	1/2	관리 부서	교무처

제1조(목적) 원격수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“원격수업관리 위원회”(이하 “위원회”)를 둔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, 교무처장과 교수학습연구지원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교수, 직원, 전문가, 학생을 포함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의 구성 시 학생위원의 인원은 전체위원 정수의 10분의 3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원격수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2. 원격수업 교과목 개폐에 관한 사항
3. 원격수업 콘텐츠 품질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
4. 원격수업의 질 관리에 관한 사항
5. 원격수업 관련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
6. 기타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

제4조(회의)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	원격수업관리위원회 규정	문서번호	5-1-39		
		제정일	2017. 06. 20.		
		개정일	2022. 02. 25.		
		페이지	2/2	관리 부서	교무처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